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청도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4. 1.



<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5건	6	9	1	3,694	1	284,780	0	0
1	□ □	과 ▶▶▶▶▶▶ ▶▶ 퇴직교육준비 등에 대한 후속인사 부적정		1							
2	□ □	과 별정직 공무원 임용절차 등 부적정	1								
3	□ □	과 질병 휴직자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부적정	1		1	3,694					
4	◎ ◎	과 기술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1							
5	◎ ◎	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 부적정		1							
6	◆ ◎	과 가동보 구입 및 설치 계약 부적정		1							
7	À À À À	과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8	Ě Ě	과 야영장시설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1							
9	Ě Ě	과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1							
10	β β β β	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1							
11	◆ ◆	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	1								
12	◎ ◎	과 하자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1							
13	◆ ◆	과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284,780			
14	ÿÿÿÿÿÿÿÿÿÿ	과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1								
15	Ě Ě	과 내화 및 건축구조기준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퇴직교육준비 등에 대한 후속인사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에서는 관련 법령 및 업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일 현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및 전보 등의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보직관리·전보임용 기준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33153호) 제2조 및 「청도군 직무대리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또는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도군의 경우 ▶▶▶▶▶▶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법정대리 하고, 법정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의 경우 ▶▶은 \$\$\$\$관 단수직렬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도군에서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2023. 1. 10.) 이전까지 ▶▶▶▶▶▶ ▶▶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관을 직위승진 하도록 하였다.

[표] ▶▶▶▶▶▶ ▶▶ 인사위원회 의결 및 발령 현황

구 분	▶▶▶▶▶▶ ▶▶ 인사위원회 직위승진 및 발령 현황			비 고
	인사위원회 직위승진 의결		전보발령	
시 기	2020. 6. 18.	2022. 7. 11.	2023. 1. 1.	▶▶▶▶▶▶ ▶▶ 직위 \$\$\$\$관 단수
내 용	▶▶▶▶▶▶ ▶▶ \$\$\$\$관 ---	▶▶▶▶▶▶ ▶▶ \$\$\$\$관 ---	▶▶▶▶▶▶ ▶▶ ◆◆5급 ---	

따라서 청도군 □□과에서는 승진임용·보직관리·전보임용 기준 등을 변경하여 정기인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의결을 득한 후 관련내용을 소속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고 그 변경일의 1년 이후 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시행 방법대로 ▶▶▶▶▶▶ ▶▶의 퇴직교육 등에 대한 후속으로 \$\$\$\$관을 대상으로 직위승진자를 심의 의결하거나, 해당자가 없을 경우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후 대리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2023. 1. 10.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2022. 7. 11. 직위승진으로 ▶▶▶▶▶▶ ▶▶으로 근무하던 \$\$\$\$관 ---의 퇴직교육준비 (2023. 1. 1.)에 따른 후속인사를 진행하면서 2023. 1. 1. \$\$\$\$관 단수로 되어 있는 ▶▶ ▶▶▶▶ ▶▶ 직위를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 5급 ---를 전보발령한 후 2023. 1. 10. 단수직렬로 되어있는 ▶▶▶▶▶▶ ▶▶ 퇴직교육 결원을 행정직렬로 조정하여 && 6급 → 5급으로 승진의결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3. 4. 10. 2023년 수시인사와 관련하여 2023. 6. 23. 예정되어 있던 PPPP국장(&& 4급)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2023. 1. 10.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배제하였던 \$\$\$\$관을 다시 승진 가능 직렬로 책정하고, 2023. 4. 10. \$\$\$\$사 ---을 \$\$\$\$관으로 승진의결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관 --- 및 ---가 ▶▶직위 임용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의 경우 승진심사 및 승진의결에서 일정기간 손해를 보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별정직 공무원 임용절차 등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일 현재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0호)」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임용계획서를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공고 등의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과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서요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로 공고 등의 임용절차를 생략한 채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였다면 그 채용목적인 군수 비서요원에 맞게 지방별정직의 직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1) '5. 임용계획 수립 및 7. 공고편'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2. 12. 30. 지방별정직 -급 상당(비서) --- 임용과 관련하여 2022. 12. 12. 군수 비서요원으로 지방별정직 -급 상당의 채용공고를 생략하여 임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내용으로 2022. 12. 21. 청도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계획 및 심의대로 공고를 생략하여 2023. 1. 2. 지방별정직 -급 상당으로 ---을 임용한 후 2022. 12. 1. 채용된 지방전문임기제 ▶급(-급 상당)의 BBBBBB관 ---의 ¥¥비서요원으로 최초 임용시점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

[표] 지방별정직 채용 현황

지방별정직(-급상당)임용일	채용목적	채용공고	채용 후 인력배치	비 고 (BBBBBB관 관련)
2023. 1. 2. 지방별정직(-급 상당) ---	-- 비서요원	생략	지방전문임기제 (-급 상당, BBBBBB관) '---'의 비서요원	2022. 12. 1. '지방전문임기제 -급'으로 '---'를 'BBBBBB관'으로 임용

한편 지방별정직 -급 상당 ---이 2023. 1. 2. 임용된 후 청도군 행정전화 조직도 (2023. 1. 16. 배포) 등에 BBBBBB관의 ¥¥비서로 ---을 표시하고 대외적으로 알렸으며, 청도군청 홈페이지 '조직 및 업무분장' 항목에도 공고 등을 생략한 채 --비서요원으로 채용된 지방별정직 -급 상당 ---이 지방전문임기제 -급(-급 상당) 공무원인 ---의 업무를 보좌한다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공개경쟁채용으로 임용절차를 진행했다면 채용을 보장할 수 없었던 대상자가 -- 비서요원이라는 목적으로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달리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비서로 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지방별정직(-급 상당)의 경우 채용목적대로 보직을 부여하는 등 적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질병 휴직자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에서는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질병휴직 등의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8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운영지침²⁾(행정안전부 예규) 제79조(휴직자의 복무관리편)에 따르면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규정하면서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매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하되 매 반기별 또는 수시(복직사유 발생시)로 휴직자로부터 복무상황 보고서를 제출받아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귀명령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따라서 청도군 □□과에서는 소속공무원의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휴직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휴가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발령 이후 부터는 매 반기별 또는 수시(복직사유 발생시)로 휴직자로부터 복무상황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휴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 확인되면 복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와 함께 목적 외 사용 기간에 지급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 3. 4. ~ 2021. 2. 7. 기간동안 난임으로 질병휴직 했던 -- -급 --- 등 2명의 복무와 관련하여 질병휴직 기간 종료 이전에 임신이 되어 당초 휴직목적인 난임이 해소되었음에도 복무상황 신고 및 복귀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2021. 5. 26. ~ 2023. 5. 25. 기간동안 난임으로 질병휴직 하였던 -- -급 ---은 당초 목적과 달리 난임해소를 위한 치료 등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으며³⁾,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휴직자들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질병(난임) 휴직자 현황

연번	질병 및 육아 휴직자 현황					비고 (수령금액)
	직급	성명	질병(난임) 휴직기간	임신험인 (경위서)	육아휴직 기간	
계		3명				3,694천 원
1	---급	---	'20. 3. 4. ~ '21. 2. 7.	'21. 1. 16.	'21. 2. 8. ~ '21. 8. 7.	1,266천 원 (1,266,490원)
2	-----급	---	'21. 10. 1. ~ '22. 5. 15.	'22. 4. 4.	'22. 5. 16. ~ '22. 8. 28.	2,428천 원 (2,428,190원)
3	---급	---	'21. 5. 26. ~ '23. 5. 25.	-	-	* 임신 사실 없음

그 결과 일부 휴직자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였고 그와 관련된 봉급을 지급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잘못 지급된 질병휴직수당 3,694천 원은 회수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2021. 5. 26. ~ 2022. 5. 25. 기간동안 산부인과 진료 1회(난임질병휴직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2022. 5. 26. ~ 2023. 5. 25. 기간동안은 산부인과 진료기록 없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술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 ◎◎과에서는 --(--, --) 하수관거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을 아래 [표 1]과 같이 (주)---(공동수급체)와 2023. 6. 23.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 --) 하수관거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 계약현황

(단위 : 천 원)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용역기간	비고
2023. 6. 2.	2023. 6. 23.	263,547	(주)---(공동수급체4)	2023. 6. 29. ~ 2026. 6.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 1. 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경영 상태 평가는 용역 규모별⁵⁾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

4) (주)--- 및 (주)--건설(7:3 비율의 공동수급체)

5)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경우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⁶⁾)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 협회에서 발생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고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방법으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등 평가점수에 시공비율(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과는 --(--, --) 하수관거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 적격심사 시 추정가격⁷⁾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해야 했고, 신용평가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했으며,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하거나 유효기간

6) 점수=(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7)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 --) 하수관거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의 추정가격은 272,806천 원 / 기초금액은 300,087천 원

안에 있지 아니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며,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 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4순위 입찰자인 공동수급체 (주)--- 및 (주)--건설의 경영상태 평가를 하면서 종합평가방법이 아닌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⁸⁾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총점 95.32점으로 적격 판정하였다.

[표 2] 경영상태 평가 내역(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단위 : 점)

업체명	구분	재무평가계	신용평가계	소계*시공율	총평점	비고
				합계	20	
(주)---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BB0)	-	20	20*70%	14	등급평가일 (2023. 3. 28.)
(주)--건설	재무평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20 ⁹⁾	-	20*30%	6	2021. 12. 31. 기준 협회 신고 자료

8)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이 경우 입찰자(공동수급체)인 (주)---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주)--건설은 재무비율평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하였음을 적격심사내역(채점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9) (주)--건설,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경영상태 평가자료(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기준비율	
214,756,000	234,648,000	185,994,000	19,892,000	자본	46.11%
				유동	187.87%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기준비율의 100% 이상은 10점)

$$\frac{214,756,000}{234,648,000} = 91.5226\% \quad \frac{91.5226\%}{46.11\%} = 198.49\% \quad (10\text{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기준비율의 100% 이상은 10점)

$$\frac{185,994,000}{19,892,000} = 935.0191\% \quad \frac{935.0191\%}{187.87\%} = 497.69\% \quad (10\text{점})$$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아래 [표 3]과 같이 종합평가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고 신용평가의 경우 공동수급체 중 (주)---건설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받은 자료로 적격심사를 위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경영상태 평가 내역(종합평가방법)

(단위 : 점)

업체명	재무평가	평점(A) (재무평가*0.3)	신용평가	평점(B) (신용평가*0.7)	소계((A+B)*시공율)	총평점	비고
					합계	18.95	
(주)---	20 ¹⁰⁾	6	20 ¹¹⁾	14	20*70%	14	입찰공고일 2023. 6. 2.
(주)---건설	20	6	15 ¹²⁾	10.5	16.5*30%	4.95	

그 결과 청도군 ◎◎과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4.27점으로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2023. 6. 23.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주)---,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경영상태 평가자료(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기준비율	
				자본	유동
838,458,000	1,219,721,000	1,474,465,000	381,263,000	46.11%	187.87%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기준비율의 100% 이상은 10점)

$$\frac{838,458,000}{1,219,721,000} = 68.7418\% \quad \frac{68.7418\%}{46.11\%} = 149.08\% \quad (10\text{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기준비율의 100% 이상은 10점)

$$\frac{1,474,465,000}{381,263,000} = 386.7317\% \quad \frac{386.7317\%}{187.87\%} = 205.85\% \quad (10\text{점})$$

11)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BB0 등급평가일은 2023. 3. 28.로 입찰공고일(2023. 6. 2.) 이전 평가된 자료로 20점으로 평가

12)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등급평가일은 2023. 6. 14.로 입찰공고일(2023. 6. 2.) 이후 평가된 자료로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로 평가할 경우 15점으로 평가

[표 4]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천 원)

계약체결현황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95.32	94.27		
--(--, --) 하수관거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	(주)-- (공동수급체)	263,547	2023. 6. 23.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22	22 ¹³⁾	22	적격 통과 점수 (95점)
					2)지역업체 참여도	3	3 ¹⁴⁾	3	
					3)기술능력	5	5 ¹⁵⁾	5	
					4)경영상태 가)종합평가 (1)신용평가 (2)재무평가	20	20	18.95	
				나. 입찰가격	50	45.32 ¹⁶⁾	45.32		
				다. 기술인력보유상황	-10	-	-		
				라. 계약질서준수	-1	-	-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3)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로 평가

업체명	10년간 용역실적	실적*시공비율	소계	평가비율
(주)---	723,260,650	723,260,650*70%	506,282,455	506,282,455 ----- 272,806,364 = 185.5831%
(주)--건설	-	0*30%	0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100% 이상이므로 22점으로 평가

14) (주)--건설은 영천 소재로 시공비율(용역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며, 3점으로 평가

15) 입찰공고상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5점으로 평가

16) 입찰가격

$$45.32 = 50 - 4 \times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263,547,420)}{\text{예정가격}(303,507,275)} \right) \times 10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 제15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 10. 24.)」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며,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 10. 24.)」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이행능력(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중 중간처리 관련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 따르면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90%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과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평가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의 경우 입찰자가 신기술의 전부를 사용

협약을 통해 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90%만 인정하여야 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청도군 ◎◎과에서는 이행능력평가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항목에 대해 신기술 개발자에 한하여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고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90%만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의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만곡판으로 개량된 죠크러셔를 이용하여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생산효율을 향상시킨 환경신기술 인·검증(중간처리) 기술 관련 사용협약 서류’의 경우에도 부적정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였다.

한편 감사일 현재 재평가할 경우 아래 [표 1]에서 [표 2]와 같이 0.9점으로 평가되었다.

[표 1] 신기술 사용협약 현황

신기술 내용	소유자(개발자)	사용자(보유자)	환경·건설 신기술 특허 개발(협약)현황
만곡판으로 개량된 죠크러셔를 이용하여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생산효율을 향상시킨 환경신기술 인·검증(중간처리)	(주)----- (대표자 ---, -- 소재)	(주)----- (대표자 ---, -- 소재)	신기술 인·검증번호 : 환경분야 NET 제---호(인증) 환경분야 NET 제---호(검증) 신기술에 대해 (주)-----이 ‘사용협약’으로 보유

[표 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재평가(정당배점: 2.9점)

(단위 : 점)

환경 건설분야 구분	배점에 따른 평점	평가(소계)
중간처리 신기술 중 인·검증 기술 (A)	1	(A(1)*C(0.9))+B(2)=2.9
기본배점 (B)	2	
신기술 대여·협약·제휴 여부(배점의 90% 적용) (C)	해당됨	

이로 인해 아래 [표 3]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4.99점으로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2023. 9. 18.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체결현황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명(계약일)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합계			95	94.99	적격 통과 점수 (95점)		
--지구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23. 9. 18.) ※ 입찰 참여 : 52개 업체	(주)-----	341,413	1. 이행능력	가. 당해용역 수행금액	수집운반	5	5		5	
					중간처리	6	6		6	
					1일 수집· 운반능력	3	3		3	
					1일 처리능력	4	4		4	
					처리장까지 거리	2	2		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3	3		2.9	
					순환골재 품질인증	4	3.91		3.91	
					용역이행 능력평가	3	3		3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10	10
					3. 입찰가격		60		55	55
					4. 신인도		평가표 상 해당 가·감점		0.09 ¹⁷⁾	0.18 ¹⁸⁾
					5. 결격사유		평가표 상 해당 감점		-	-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7) 공제조합에 가입(0.09점)

18) 신인도 재평가(0.18점)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10.5%(0.09점) + 공제조합에 가입(0.09점)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가동보 구입 및 설치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청도군 ◆◆과(구 ◆◆◆◆과)에서는 ‘---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재신기술 선정위원회에서 방재신기술이 적용된 3개 가동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위 사업의 가동보 구입 및 설치에 적용할 공법으로 주식회사 -----의 방재신기술¹⁹⁾이 적용된 가동보를 선정한 후 2022. 12. 6. ○○과로 구입의뢰를 하여 2022. 12. 26. 위 업체와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가동보 구입 및 설치’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1,431,563,000원, 주식회사 -----)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에 부쳐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²⁰⁾ 제25조 제1항 제6호4),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행정안전부 2020. 2.)」 및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방재신기술 활용 협조²¹⁾에 따르면 방재신기술 3개 이상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재시설 설치에 적용할 신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 회전구동축과 등간격지지대가 일체화된 축구동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 기술(방재신기술 제2020-12호)

20) 2022. 9. 20. 대통령령 제329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21) 경상북도(방재신기술 활용 협조 요청, -----과-2020 5. 11.)에서는 행정안전부(-----과-968, 2020. 5. 8.)를 통해 통보 받은 방재신기술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통보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2021. 6. 24.) 제1장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발주자는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과에서는 위 사업인 가동보 구입·설치의 경우 가동보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정이 설계서에 반영(부가세 포함, 가동보 제작 1,067,638,000원, 운반·설치 439,270,700원) 되어 있고, 단순 물품 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제작한 가동보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2022. 12. 6. ◎◎과로 위 사업과 관련된 수의 계약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입의뢰 및 계약요청을 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자인 주식회사 -----의 건설업등록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과에서도 건설업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2022. 12. 26. 위 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²²⁾하였다.

그 결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위 업체에 공사 부분을 수주하는 특혜²³⁾를 제공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2) 주식회사 -----은 계약체결일(2022. 12. 26.) 기준 건설업을 무등록한 업체였으며, 이후 2023. 6. 2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전문공사)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23) 운반·설치비 설계 내역 중 운반비(6,470,925원)를 제외할 경우 설치비는 432,152,680원(부가세 포함)이 되고, 기초 가격의 95.00%로 낙찰되었으므로 공사 부분 수주액은 410,545,040원(부가세 포함)이 됨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ÀÀÀÀ과
 내 용

청도군 ÀÀÀÀ과에서는 1999. 12. 17. 대구지방환경청과 -- &&&&&& 조성계획(이하 &&&& 조성계획 이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후 2002. 4. 25.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2002. 4. 25.부터 2017. 12. 4.까지 관광시설 및 건축연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5차례에 걸쳐 관광지 조성계획²⁴⁾을 변경하였다.

[표 1] --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내역

일자	구분	변경내용	토지이용계획 변경면적(m ²)	누적변경 규 모
'02.4.25.	-- &&&& &&& 조성계획 승인 (---- -- 제2002-2호)	토지이용계획	24,772	2.65%
'03.6.9.	-- &&&& &&& 조성계획 변경 (---- -- 제2003-6호)	관광시설 및 건축연면적	4,500	3.13%
'10.7.26.	-- &&&& &&&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 -- 제2010-19호)	토지이용계획	57,350	9.27%
'11.4.25.	-- &&&& &&& 조성계획(변경) 승인 (---- -- 제2011-14호)	건축물 신축 및 증축	-	9.27%
'12.4.6.	-- &&&& &&& 조성계획(변경) 승인 (---- -- 제2012-24)	건축물 증축 및 면적 변경	-	9.27%
'17.12.4.	-- &&&& &&&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제2017-85호)	토지이용계획 변경	-	15.5%

24)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라 ---- 조성계획은 청도군이 수립하였고, 2002. 4. 25.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음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래 [표 2]와 같이 청도군이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행해야 하는 관리책임자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것과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이행한 사실을 적발한 후 청도군에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표 2] -- &&&&& 조성계획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위반사항(관련 법령)	과태료	위반자	과태료 납부자
'19. 6. 25.	관리책임자 변경 미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	160만 원	청도군 (ÅÅÅÅ과)	----
'19. 6. 25.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착공 미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1항)	160만 원	청도군 (ÅÅÅÅ과)	----
'22. 9. 8.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	800만 원	청도군 (ÅÅÅÅ과)	(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원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함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청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를 착공,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청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부지면적²⁵⁾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 누적으로 산정하여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25)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

제3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표 2]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및 「청도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조성계획은 청도군이 수립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과 &&&& 조성계획을 협의하며, 사업계획을 협의한 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청도군이 된다. 그러므로 위 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청과 관리책임자 변경 및 대상사업 재착공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청으로 통보하여야 했으며, 환경청과의 협의한 토지이용계획이 누적하여 15퍼센트 이상 변경된 경우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환경청과 변경내용을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청도군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 6. 25. -- &&&& &&& 조성계획 관리책임자 변경사항 미통보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미통보를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청도군에 부과된 과태료(320만 원)를 (주)----(26)가 납부하도록 하였고,

2017. 12. 4. &&&&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과 변경협의 없이 사전공사를 한 이유로 부과받은 과태료 800만 원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한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하 (주)---이라 한다)에 과실이 있다는 의견(28)으로 2022. 10.(날짜 미상) 위 업체에 고지서를 전달하여 납부(29)하도록 하였다.

26) 2019. 6. 25. 환경청으로부터 사전통지받은 과태료를 2019. 6. 26. (주)----가 납부토록 공문을 발송(ÀÀÀÀ과 -12152)하여 납부(날짜 미상)하도록 하였음

27) (주)---은 2019. 4. 8. --&&&&&&& 내 운동오락시설인 ----- 시행자인 (주)----와 용역계약(계약기간 : 2019. 4. 8. ~ 2019. 9. 30.)을 체결한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

28) 청도군에서는 감사기간 중 (주)---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대구지방 환경청과 변경협의를 거칠 수 있었으므로 용역업체의 업무과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변경협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 대구지방환경청과 변경협의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청도군이란 점은 변함이 없으며 제시된 의견만을 검토해 볼 때에도 2017. 12. 4. 토지이용계획이 누적하여 15퍼센트 이상 변경된 후 공사 착공일은 2019. 3. 7. 이므로 위 업체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청도군이 변경협의 사유 발생 후 공사 재착공*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태료(8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의 귀책은 인정하기 어려움

* 2019. 6. 24. 청도군은 2019. 3. 7. 공사 재착공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 6. 24. 이 사실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29) 과태료 부과를 받은 시점에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 2017. 12. 4. 기준 업무담당자인 ---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하였고, ---이 (주)---에 과태료 고지서를 메일로 전달한 후 2022. 10. 13. (주)---이 과태료 8백만 원을 납부하였음

그 결과 &&&& &&& 조성사업이 환경청과 변경협의 전에 추진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청도군이 부담하여야 할 과태료가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당하게 과태료 납부 의무를 전가하여 납부된 과태료 해당액을 관련 업체에 되돌려 주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야영장시설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E과
내 용

청도군 E과에서는 2020. 7. 14. 청도군 --면 --리 611에 ‘---’이 야영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협의하면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고, 2020. 9. 28. ‘---’이 건축협의 신청자(건축주)를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³⁰⁾’로 변경하는 농지전용변경 신청에 전용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2020. 12. 15.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가 기존 농지 전용협의를 받은 청도군 --면 --리 611에 --면 --리 621-1을 추가하여 야영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 변경에 대해 2020. 12. 22.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다.

[표] 농지전용 허가(변경) 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	농지전용면적	전용목적	수허가자	건축허가
---	답	2,265㎡	2,265㎡	야영장시설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2021.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기업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30) 이번 감사기간 중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2021. 3. 23. 위 법인은 명칭을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야영장 및 펜션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됨

관리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농업회사법인이 위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³¹⁾ 제3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할 때는 전용목적 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경우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 [별표 3] 제2호에 따르면 관광농원의 경우 영농체험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등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야영장업과는 등록 기준에서 차이³²⁾가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로 건축주를 변경 및 농지를 전용하여 야영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 변경 협의에 대해 불가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을 설치³³⁾하기 위하여 건축주를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³⁴⁾하였다.

그 결과 농지전용협의를 불가하여 건축허가(변경)를 할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전용을 허가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1) 2020. 11. 24. 제311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32) 관광농원에는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 등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영농체험시설은 관련 기준에 따라 면적이 2,000㎡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33)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는 2021. 4. 6. 농지전용을 받은 ---리 611, 621-1에 “----- 캠핑장”을 운영 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4) E&E과-48039(2020.9.28.)호

경 상 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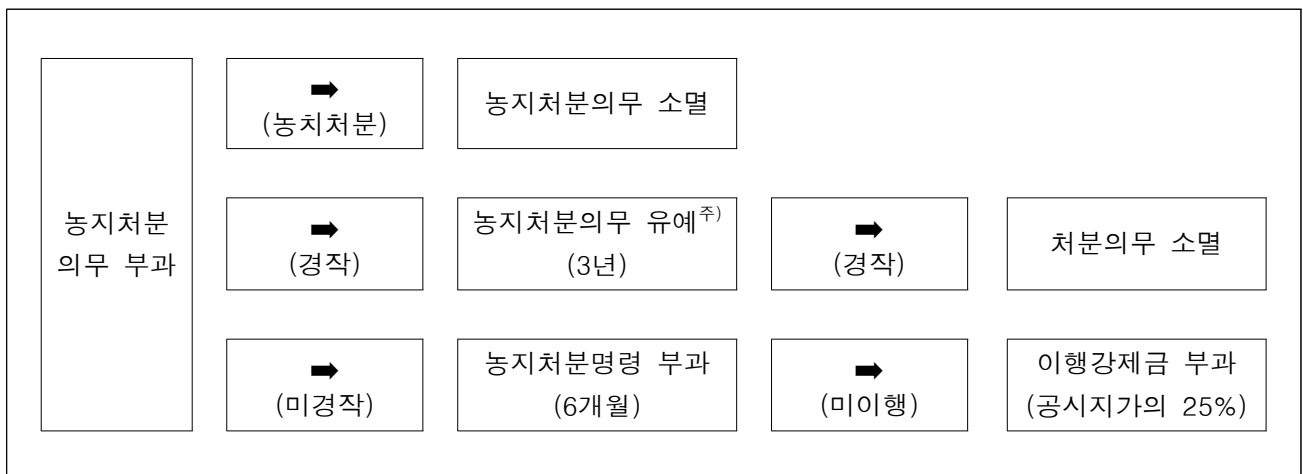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ĒĒ과
내 용	

청도군 ĒĒ과에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아래 [표 1]과 같이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이하 “농지처분의무”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고, 만약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농지처분의무 기간(1년)이 지난날부터 3년간 농지처분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1] 농지처분의무 부과 이후 업무흐름도



주) 처분의무를 유예받은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을 하여야 함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2020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농지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 시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그 처분의무 등이 소멸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을 때 농지전용협의를 대해 불가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1. 3. 29. ---가 농지처분의무명령을 부과받기 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 --리 718-2 필지에 2021. 5. 25. 면적 120㎡가 증가하는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하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2021. 6. 28. 부적정한 농지전용변경 허가를 하였다.

[표 2] 농지처분의무(사유 : 휴경) 부과 농지의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현황

대상농지	면적(㎡)	소유주	농지처분의무 부과(사유)	농지전용 변경협의				건축허가
				일자	신청인	면적(㎡)	목적	
---	2,243	---	‘21.5.3.~ ’22.5.2. (휴경)	‘21.6.28.	---	413→533 (증120)	단독주택	‘21.6.29.

그 결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을 하여야 할 농지에 단독주택이 건축허가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BBBB과
내 용	

청도군 BBBB과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판매업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식품위생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3호 자목에 따르면 식품 판매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 사항 중 [별표 17] 제3호 자목(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판매)의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이 거짓·과장 된 광고인³⁵⁾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하고, 같은 위반행위의 기준은 같은 품목에

35) 제3호 다목의 4)의 가)부터 차)를 제외한 경우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를 한 경우로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 제조 정지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함)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BBBB과에서는 식품판매업자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2년부터 전화신고, 국민신문고 등 민원에 의해 각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행정처분한 사항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에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의 표시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만 처분하고,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2. 8. 10. ‘----’의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 같은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2차 위반으로 부적정하게 가중 처분 하였으며, 2023. 5. 12. 위 업체의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 되었으나 기타 거짓·광고에 대한 시정명령만 처분하고, 미심의 광고에 대한 영업정지 5일은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 --는 식품판매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영업 정지 7일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30만 원으로 감경하였다.

[표 1]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 관련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연번	업 소 명 (위 반 자)	소 재 지	위반일	위반내용	처분일	처분내용		비고
						정당처분	실제처분	
1	--- (---)	--- ---	'22. 02. 15.	거짓, 과장 광고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	'22. 03. 07.	시정명령	미이행	
2	-- ----- (---)	--- ---	'22. 10. 27.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목적 진열	'22. 11. 04.	영업정지 7일	과태료 30만 원	
3	---- (---)	--- ---	'22. 08. 10.	미심의 광고	'22. 08. 23.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4	---- (---)	--- ---	'23. 05. 12.	미심의 광고	'23. 06. 12.	영업정지 5일	미이행	

※ 청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행정처분 사항 공표 미이행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BBBB과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 아래 [표 2]와 같이 9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사실 및 내용을 청도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에 대한 홈페이지 등 미공표 현황

연번	연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비고
1	2021	----	----	---	영업정지	
2	2022	-----	----	---	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 제품 폐기	
3	2022	---	----	---	영업정지	
4	2022	-----	----	---	영업정지	
5	2022	-----	----	---	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 제품 폐기	
6	2022	-----	----	---	품목제조정지 5일	
7	2022	----	----	---	영업정지	
8	2022	-----	----	---	과징금 690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같음)	
9	2023	-----	----	---	영업정지(2023.7.28.~9.10.)	

※ 청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소홀

「식품위생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관할 구역 내의 영업소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 및 영업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BBBB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 아래 [표 3]과 같이 6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소홀 내역

연번	연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비고
1	2020	-----	---- ---	----	시정명령	
2	2022	-----	---- ---	----	시정명령	
3	2022	-----	---- ---	----	시정명령	
4	2022	-----	---- ---	----	시정명령	
5	2022	-----	---- ---	----	시정명령	
6	2022	----- ---	---- ---	----	과징금 690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갈음)	

※ 청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폐지 업무 처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³⁶⁾ 제1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³⁷⁾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법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의 공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도군 ◆◆과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적절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의 행정행위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 아래 [표 1]과 같이 37건의 농업생산기반 시설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함에 있어 관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등을 하지 않고 부적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하였다.

36) 시행 2021. 11. 19.

37) 시행 2021. 10. 14.

[표 1]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업무(사용허가·용도폐지 관련 관계 주민 의견 수렴) 현황

연번	구분	위치			지목	면적(m ²)	허가일자	의견수렴 여부	비고
		읍면	리동	번지					
1	사용허가	---	---	---	구	17	2021.12.27.	부	
2	사용허가	---	---	---	구	21	2022.01.12.	부	
3	사용허가	---	---	---	구	15	2022.02.04.	부	
4	사용허가	---	--	---	구	38	2022.02.24.	부	
5	사용허가	---	---	---	구	16	2022.03.07.	부	
6	사용허가	---	---	---	구	7	2022.03.08.	부	
7	사용허가	---	---	---	구	10	2022.03.18.	부	
8	사용허가	---	---	---	구	24	2022.03.29.	부	
9	사용허가	---	---	---	구	19	2022.03.29.	부	
10	사용허가	---	--	---	구	8	2022.03.29.	부	
11	사용허가	---	---	---	구	5	2022.05.13.	부	
12	사용허가	---	---	---	구	11	2022.05.13.	부	
13	사용허가	---	---	---	구	15	2022.06.09.	부	
14	사용허가	---	---	---	구	7	2022.07.18.	부	
15	사용허가	---	---	---	구	5	2022.07.28.	부	
16	사용허가	---	---	---	구	13	2022.08.10.	부	
17	사용허가	---	---	---	구	6	2022.08.26.	부	
18	사용허가	---	---	---	도	5	2022.09.08.	부	
19	사용허가	---	---	---	구	50	2022.09.15.	부	
20	사용허가	---	---	---	구	24	2022.09.15.	부	
21	사용허가	---	---	---	구	2	2022.09.17.	부	
22	사용허가	---	---	---	구	23	2022.09.23.	부	
23	사용허가	---	---	---	구	12	2022.11.24.	부	
24	사용허가	---	---	---	도	2	2022.12.02.	부	
25	사용허가	---	---	---	구	8	2022.12.28.	부	
26	사용허가	---	---	---	구	12	2023.02.14.	부	
27	사용허가	---	---	---	구	64	2023.02.16.	부	
28	사용허가	---	---	---	구	9	2023.03.24.	부	
29	사용허가	---	---	---	구	1	2023.03.28.	부	
30	사용허가	---	---	---	구	13	2023.04.05.	부	
31	사용허가	---	---	---	구	21	2023.04.05.	부	
32	사용허가	---	---	---	구	7	2023.05.09.	부	
33	사용허가	---	---	---	구	10	2023.05.26.	부	
34	사용허가	---	---	---	도	8	2023.06.09.	부	
35	사용허가	---	---	---	구	25	2023.07.04.	부	
36	사용허가	---	---	---	구	17	2023.08.09.	부	
37	용도폐지	---	---	---	구	100	2022.07.18.	부	

※ 청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89건 중 85건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허가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기간연장 현황

년도	사용허가 연장 현황(건)			비고
	대 상	연 장	미조치	
합계	89	4	85	
2020년	24	-	24	
2021년	25	2	23	
2022년	16	1	15	
2023년	24	1	23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령에 규정된 범위에 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과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적절한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아래 [표 3]와 같이 2020.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479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대상 중 일부(232건)만 부과함으로 인해 사용료가 미부과된 금액(7,482,740원)이 발생하였고 허가 시 산정된 사용료와 실제 사용료 부과액을 상이하게 부과함으로써 사용료가 오부과(508,440원)되는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매년 미납액과 과오납이 발생되게 하였다.

[표 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년도	부과대상		부과현황			징수현황		오부과 현황				비고
	건	산정금액	건	산정액	부과액	건	징수액	건	오부과	건	미부과액	
합계	479	15,323,720	232	7,742,300	8,025,160	170	6,055,300	26	508,440	247	7,482,740	
2020	93	2,938,840	57	1,719,000	1,695,200	51	1,530,100	2	23,800	36	1,219,840	
2021	109	3,510,630	63	2,216,500	2,327,000	53	1,909,100	7	212,880	46	1,294,050	
2022	132	4,122,340	57	1,963,700	2,198,460	46	1,946,500	4	150,560	75	2,060,040	
2023	145	4,751,910	55	1,843,100	1,804,500	20	669,600	13	121,200	90	2,908,810	

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업무(사용허가, 용도폐지 등)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른 적절한 사용료 부과·징수를 하지 않아 세수의 누락 및 시설사용에 형평성 등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사용료 미부과 등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등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 ◎◎과에서는 청도군 관내에 시행된 시설공사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하자검사 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8. 시행) 38)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도군 ◎◎과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2회(‘20년 하반기, ‘22년 하반기)만 하자검사 계획을 통지하였고 하자기간

38) 제13장 제10절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목적물의 하자

만료 14일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최종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은 통보를 하지 않아 소속 공무원 등이 걱정한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걱정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

[표 1] 2020년 ~ 2023년 하자 검사 현황

년도	통보여부 (회)	통보시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대상사업(건)	하자검사 이행(건)	최종검사 이행(건)	비고
합계	2회	연 2회 이상 정기시행	586	36	-	
2020	1	2020년 하반기	81	30	-	
2021	-	미통보	175	-	-	
2022	1	2022년 하반기	167	6	-	
2023	-	미통보	163	-	-	

※ 청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감사일 현재 아래 [표 2]의 사업지구에 대해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 접근로 개설공사(담보책임기간만료일은 2023. 9. 3.)” 구간 내인 ----- 내부 콘크리트 도로포장부 균열이 다수 발견하였으며, 균열하자 발생에 대하여 하자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하자보수비용(17,600천 원)에 대하여는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해야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2] 하자책임기간만료에 따른 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업기간	하자만료일	하자부분	보수방법	보수비	비고
----- 접근로 개설사업	`15.04.23. ~ `20.09.04.	`23.09.03. (3년간) 철근콘크리트	터널내부 콘크리트 도로포장부	패커주입 및 표면보수	17,600	

※ 청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용역)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총괄)	청도군 —면 --리~ --리	하천정비 8.3km 교량 2개소 펌프장 2개소	31,907	19,367	12,540	2023.06.21. ~ 2027.10.04.	(주)-- ---	2%
--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차)	청도군 --면 --리	가동보 1개소	2,597	1,082	1,515	2023.06.23. ~ 2024.04.14.	(주)-- ---	5%
--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청도군 —면 --리~ --리	실시설계용역 1식	1,454	1,454	-	2019.10.10. ~ 2022.02.15.	(주)-- ---	100%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³⁹⁾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과에서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여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직접구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부직포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데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여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관급자재로 구매시보다 사업비 33,140천 원⁴⁰⁾이 향후 추가로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2.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미등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9)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40) 관급자재로 직접구매(설계변경)시 도급액 감142,339천 원, 관급액 증109,199천 원

또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m³ 이상의 사토·순성토 현황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의 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감리 및 시공업체가 토석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고시 제6조에 따르면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 공사를 최초로 등록하고, 토석정보의 입력 및 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과에서는 설계 준공시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설계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하고, 공사 착수단계에는 시공 계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발생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하여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에 순성토 22,229m³ 등의 반입을 계획하면서 설계용역 준공 후(2022. 2. 15.) 10일 이내에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순성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력하지 않았으며, 공사착공 후(2023. 6. 23.) 10일 이내에 위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향후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

3.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라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제출하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45조에 따라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과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한 후 감액하여야 하며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의 5%이상 지연될 때에는 시공자가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제방둑마루 포장 거푸집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유로폼 사용이 가능하나 합판거푸집(6회)으로 설계함에 따른 과다 계상된 사업비 217,818천 원,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표준품셈을 적용한 공종(집수정)에 대한 과다 계상된 사업비 30,818천 원, 자재 현장하차비 중복 적용으로 인한 과다 계상된 사업비 1,670천 원, 각종 시험비 경비 미적용에 따른 과다 계상된 사업비 1,334천 원 등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일 현재까지도 설계변경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23. 6. 23. 착공계를 접수하였으나 시공자가 현장사무실 부지 협의 지연 등을 사유로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실착공을 하지 않아 공사진도율이 계획

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의 10% 지연되었음에도 시공자가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공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미등록 사항은 「판로지원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284,78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청도군 ㉿㊀㊁㊂㊃㊄㊅에서는 --- --리 191-3 ㉠㉡㉢㉣㉤㉥ ㉦㉧㉨㉩㉪㉫㉬㉭ ㉮㉯㉰㉱㉲㉳ ㉴㉵㉶㉷㉸㉹㉺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면서 2020.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저작권 귀속, 설계 의도 구현 및 공유재산 관리 업무 등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협의회	착 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 ㉣㉤㉥ ㉦㉧㉨ ㉩㉪㉫ ㉬㉭㉮ ㉯㉰㉱ ㉲㉳㉴ ㉵㉶㉷ ㉸㉹㉺ ㉻㉼㉽ ㉾㉿ ㊀㊁㊂ ㊃㊄㊅ ㊆㊇㊈ ㊉㊊㊋ ㊌㊍㊎ ㊏㊑㊒ ㊓㊔㊕ ㊖㊗㊘ ㊙㊚㊛ ㊜㊝㊞ ㊟㊠㊡ ㊢㊣㊤ ㊦㊧㊨ ㊩㊪㊫ ㊬㊭㊮ ㊯㊰㊱ ㊲㊳㊴ ㊵㊶㊷ ㊸㊹㊺ ㊻㊼㊽ ㊾㊿	운동시설 1,067.82㎡	㉿㊀㊁㊂㊃㊄ (‘20.5.~‘23.5.)	‘21.11.9.	‘21.12.23. (‘22.2.28.)	154	3,626	주--건설 (건축사사무소 --)	

1.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⁴¹⁾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한 같은 법 제9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미수립 또는 미준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 후 공사 진행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배치기준(안),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배치기준(안),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에서는 ○○○○○○○○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설계공모 관련 저작권 귀속 부적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및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이로 인해 응모자와 별도 협의 없이 설계자의 저작권 등을 청도군에 귀속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지침서에 공고하고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설계의도 구현 부적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설계비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등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건축과정에 해당 설계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설계자가 해당 업무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법령의 규정에 의거 설계의도 구현의 업무수행을 위해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에서는 ○○○○○○○○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비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이므로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설계자를 참여시키고 적정한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에서는 ○○○○○○○○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실시설계자인 ‘--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설계자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적정한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4. 건축공사 준공 후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할 경우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용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에서는 ○○○○○○○○○ 건립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요청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에서는 2023. 4. 17. ○○○○○○○○○ 건립공사를 준공한 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5. 11.에 허가권자인 청도군 ○○○과로 건축물대장 생성의 신청을 하였고,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에 해당하는 일시인 2023. 6. 17. 까지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도 관련 등기·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5. 우수유출 저감대책 미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우수유출 저감시설⁴³⁾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포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43)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

따라서 청도군 YYYYY에서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준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한편 청도군 YYYYY는 청도군 ----과와 ㉸㉸㉸㉸㉸㉸㉸ 건립공사의 건축협의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지면적이 4,156㎡의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 당해 시설은 우수유출 저감대책 관련 건축협의대상이 아니라고 검토44)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 법에 규정되어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권리보전에 관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4) 2021. 10. 14.경 청도군 YYYYY 및 청도군 ----과의 건축협의 회신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내화 및 건축구조기준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ĒĒ과
내 용	

청도군 ĒĒ과에서는 건축주 (주)-----으로부터 2022. 4. 29. --면 --리 192-5의 창고시설(연면적 945m²)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제출받아 2022. 7. 19. 건축허가를 수리하였고, 2022. 11. 1.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

1. 내화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창고시설 및 공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ĒĒ과에서는 창고시설, 공동주택, 공장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이 내화구조인 경우에 건축허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도군 ĒĒ과에서는 2022. 4. 29. (주)-----으로부터 2022. 4. 29. 접수한 --면 --리 192-5의 창고시설(연면적 945m²) 신축 사항을 검토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붕내화구조 인증서 등이 없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는 등 내화구조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내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단위 : m²)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지붕내화구조인증서	비고
--면 --리 192-5	'22.7.19.	(주)-----	창고시설	945	무	

2. 건축구조기준 적용 부적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KDS 41 12 00)」의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에 따르면 지역별 기본풍속 중 청도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에 따라 28~32m/sec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 Eë과에서는 건축사 등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적정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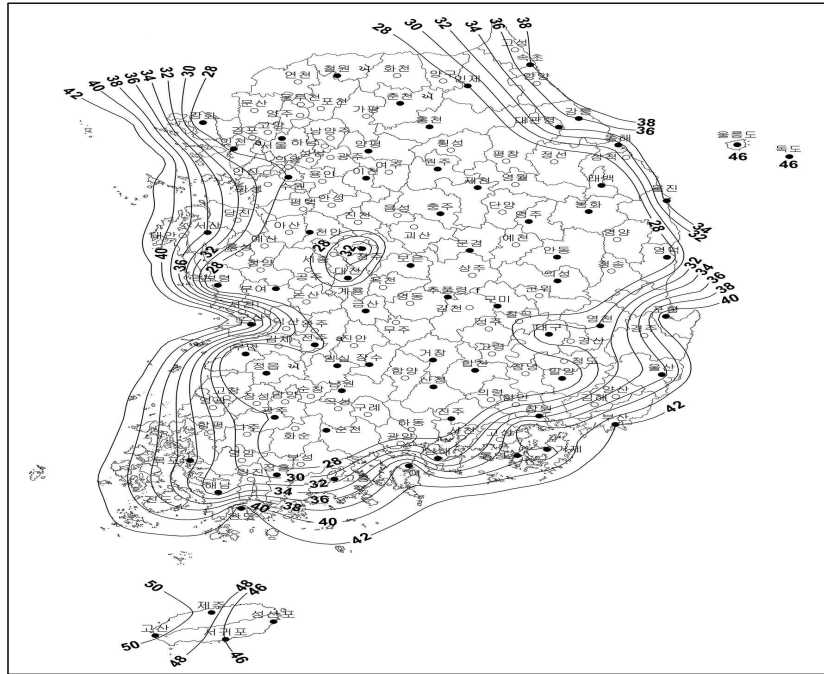
그런데 청도군 Eë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축주 ---이 --- --리 634에 신청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도서 확인·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 기본풍속이 28m/sec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에 미달한 24m/sec인 개정 전의 기본풍속이 적용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 보완 등 조치 없이 2023. 2. 3.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등 총 4건의 건축구조(기본풍속)이 부적정하게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처리하였다.

[표 2] 건축구조기준 적용 부적정 현황

(단위 : m/s)

연번	건축주	대지위치	허가일	연면적 (m ²)	주용도	적 정 기본풍속	허 가 기본풍속	비고
1	-----	--면 --리 산68-1	'23.2.16.	319.2	제1종근린 생활시설	30	24	
2	---	--면 --리 산152 등 3	'22.11.14.	212.43	야영장시설	28	27.72	
3	---	--- --리 942	'23.3.6.	173.29	단독주택	28	26	
4	---	--- --리 634 등 2	'23.7.5.	393.82	제1종근린 생활시설	28	24	

[그림] 지역별 기본풍속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